



(www.dhc.ac.kr)

대구보건대학교

헬스매니지먼트센터 운영 지침

2020. 3

대구보건대학교
(헬스매니지먼트센터)

대구보건대학교 헬스매니지먼트센터 운영지침

제정일자 : 2020.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헬스매니지먼트센터(이하“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센터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센터시설 이용 상의 편의를 위해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센터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센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로부터 이용계약 종료일 또는 이용허가의 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를 말한다.

제3조(지침의 효력 및 변경) ①이 지침의 내용은 센터 시설 내 게시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인쇄된 지침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회원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센터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②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본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센터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센터 시설과 효율적이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회원은 당해 센터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가 있다.

③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시 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회원은 이 지침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게시 및 설명 의무) ①센터 시설에는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현황
2. 프로그램 신설 및 변경
3. 프로그램 이용료
4. 약관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회원 안전수칙 등 필요사항
7. 이용시설 안내 및 운동기구 사용법

②센터는 회원이 센터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종류) ①회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1개월 회원”, “3개월 회원”, “12개월 회원” 및 “일일회원” 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원의 이용기간은 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민법 제160조(역(曆)에 의한 계산)을 준용한다. 단, 일일회원은 일일 이용기간을 적용한다.

1. 월(月) 또는 연(年)으로 등록할 때 역(曆)에 의하여 계산

2. 월(月) 또는 연(年)의 첫날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3.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제9조(회원의 자격) 센터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회원에 한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센터 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4. 체육시설의 제 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회합 유도, 강제적인 금전거출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타인에게 회원증 대여 또는 무단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또는 상습적인 도강행위 및 상행위를 할 경우
6. 기타 체육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원모집) ① 회원 모집은 상시로 모집하며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원 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① 회원가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센터에 내방하여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대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① 회원의 종류, 신분 및 이용요일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 신분별, 강습프로그램별 이용료 할증, 할인율 및 이용기간 연장 등은 평생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 창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④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 내에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미결제 시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제14조(회원증) ①제8조 및 제9조의 지침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카드)을 발급한다.

②회원증은 회원증(카드)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 신청은 센터에 보고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③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카드)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④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원증의 노후(바코드 훼손 등)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
2. 이용 기간 종료 후 재가입의 경우
3. 기타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장 환급 및 변경

제15조(계약해지로 인한 환급)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의 해지와 이용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전액환급
2. 폐장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전액환급
3. 기타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센터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전액환급

②회원이 이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의 '56.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 한다.

1. 센터 이용 개시일 이전 : 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
2. 센터 이용 개시일 또는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③환급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소정 양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증(카드)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 시, 총 결제 금액의 10%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이용 취소
2.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동되어 회원 간 전파가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 또는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⑤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의 이용료 반환 처리 방침에 따라야한다.

제16조(이용일의 연기) ①이용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에 한하며,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출장 확인서 등)와 소정 양식을 기재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기에 따른 이용기간은 연기를 희망한 시점에서 잔여기간을 연기한다.

③이용일의 연기신청은 월 1회에 한하며, 최대 3주까지 연기 가능하다.

④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제1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하는 이용일의 연기는 사유 소멸 시까지로 하며, 회원의 이용기간에 연장적용 한다.

제17조(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①회원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증(카드)을 반납 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센터 시설을 무단 이용한 경우
2.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
3.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센터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8조(시설이용 및 휴관) ①회원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직원에게 회원증(카드)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회원의 시설 이용은 영업시간(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 내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당해 프로그램에 한하여 이용한다.

③센터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
2. 천재지변, 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센터 게시판에 공지하고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사물함 이용) ①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센터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②개인사물함 내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열쇠의 미 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열쇠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개인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사

물함 내의 보관물품을 별도 보관하며,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⑤회원과의 개인사물함 약정 기간 중 센터는 회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임차한 개인사물함을 관리하지 않으며 도난 또는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개인사물함은 이용회원에 한하여 사용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물함과 지급한 열쇠만 사용할 수 있고 지정된 사물함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①회원은 건물·시설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센터시설·부속물 및 운동기구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지품의 보관) ①회원은 센터 관리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3조에 의거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기타) 이 운영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헬스매니지먼트센터 이용료

구분	대상	이용료			이용요일
		1개월	3개월 (5%할인)	12개월 (20%할인)	
헬스 (자유이용)	재학생 (타대학 재학생 포함) 졸업생 중고생	40,000원	114,000원	384,000원	월~토
	교직원 등	50,000원	142,500원	480,000원	월~토
	일반인	60,000원	171,000원	576,000원	월~토
		50,000원	142,500원	480,000원	월,수,금

비고 :

1. 1일 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교직원 등”이라 함은 교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퇴직 교직원, 대구보건대학교 병원 임직원, 겸임·초빙·강사를 말한다.